##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79,279,763	20,378,393
일반회계		614,795,579	18,443,867
특별회계		64,484,184	1,934,526
공기업특별회계		35,222,017	1,056,661
상수	도사업특별회계	35,222,017	1,056,661
기타특별회계		29,262,167	877,865
의료	급여기금특별회계	699,358	20,981
자활	기금특별회계	2,363,290	70,899
농공	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691,036	50,731
발전	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6,100	6,783
장기	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18,500	6,555
주차	장관리운영특별회계	1,618,040	48,541
댐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특 별 회 계	201,556	6,047
수질	개선특별회계	22,244,287	667,329

-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 제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조 (명시이월사업): "해당없음"
- 제 6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000,000천원으로 하고, 재해 · 재난목적예비비는 4,275,953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9,4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